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
(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)

의 안 번 호	2012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창동역 인근 노후된 공영주차장 보강·증축을 통해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골목 경제활성화 지원

나. 증축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해당되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장 현황

○ 위　　치 :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7-37 공영주차장

○ 규　　모 : 1,243㎡(주차구획 43면)

○ 소　　유 : 서울특별시(토지), 도봉구(건물)

○ 위치도 및 현황사진

위치도

현황사진

나. 주차장 증축 개요

○ 규　　모 : 1개층(532㎡) 증축

※ 시유지내 도봉구 소유의 철골조 건물(주차장)을 보강·증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활용방안 : 커뮤니티공간, 상인회사무실, 옥상공원 등

○ 사 업 비 : 1,146백만원(전액 구비)

다. 기대효과

○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골목상권(쌍리단길) 활성화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
>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>
>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김수환(☎ 02-2133-2370)